



# 뉴욕 재개

##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도매업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 지역의 모든 도매 업체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 사업으로 운영이 허용된 주 전역의 도매 업체에도 적용됩니다.

COVID-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도매 업체는 도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건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변경 사항을 운영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해당 지역, 주 및 연방 법률, 규정 및 표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### 의무 사항

#### 사회적 거리두기 (물리적 거리두기)

- ✓ 인원 간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. 단, 작업 활동의 안전 또는 핵심 직능으로 인해 더 가까운 거리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
- ✓ 인원 간 거리가 6피트 미만인 경우 인원은 항상 용인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✓ 실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의 경우, 건물 기본 시설 증명서에 명시된 특정 구역에 대해 최대 수용 인원의 50% 이하(감독자 제외)로 인력을 제한하십시오. 단, 시설에서 핵심 기능(예: 중요한 상품 공급)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거나 추가 완화 전략(예: 안면 마스크 상시 착용)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
- ✓ 밀폐된 공간(예: 엘리베이터, 상업용 냉장고/냉동고)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. 단, 모든 사용자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 두 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50% 미만을 유지하십시오.
- ✓ 현장의 일반 사용 공간 및 기타 해당 구역(예: 출퇴근 기록대, 건강 선별검사대)에 6피트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게시하십시오.
- ✓ 최대한 대면 회의를 제한하고 가능하면 전화 회의 또는 화상 회의를 이용하십시오. 필수 대면 모임(예: 회의)의 경우 참가자들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개최해야 합니다.
- ✓ 픽업 및 배송을 위한 지정된 영역을 설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하십시오.

### 권장 모범 사례

- ✓ 현 작업에 필요한 인원에만 한해 직접 대면을 제한하고, 작업장 시간을 조정하고, 도착/출발 시간에 시차를 두며, A/B 팀을 구성하거나, 한 구역에서 단일 팀만 동시에 작업하도록 일정을 정하여 인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조성합니다.
- ✓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한 구역에서 여러 명의 직원 및/또는 팀이 작업하지 않도록 작업 공간 및 직원 착석 구역 수를 제한하고/하거나 사용을 수정하십시오. 가능하지 않은 경우 [OSHA 지침](#)에 따라 공기 흐름, 냉온방 또는 환기가 원활한 구역에서 안면 마스크를 제공하고 착용을 요구하며 물리적 가림막(예: 플라스틱 차폐 벽)을 설치해야 합니다.
- ✓ 가능하면 동시에 제품에 닿는 손의 수를 줄이기 위해 활동을 세분화하거나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. 한 직원은 모든 포장 작업을, 다른 직원은 랩 포장 및 상자 밀봉 작업을, 그리고 별도의 직원이 트럭 적재 작업을 하도록 배치합니다.
- ✓ 좁은 통로, 복도 또는 공간에 화살표 표지판을 게시하여 양방향 도보 통행량을 줄입니다.
- ✓ 사전 예약 필수 정책을 구현하고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도록 소매점에 지시하십시오. 비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제품 검사를 수행하십시오.
- ✓ 가능하면 직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하십시오.
- ✓ 현장에 비필수 방문자의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

자택에 머무르십시오.

확산을 방지합시다.

생명을 구합시다.



# 뉴욕 재개

##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도매업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 지역의 모든 도매 업체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 사업으로 운영이 허용된 주 전역의 도매 업체에도 적용됩니다.

COVID-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도매 업체는 도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건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변경 사항을 운영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해당 지역, 주 및 연방 법률, 규정 및 표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	의무 사항	권장 모범 사례
보호 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고용주는 직원에게 용인된 안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체 시 마스크를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용인된 안면 마스크는 천 마스크(예: 수제 재봉, 킥 컷, 반다나) 및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단, 작업의 특성 상 보다 엄격한 PPE(예: N95 호흡기, 안면 보호구)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</li> <li>✓ 안면 마스크는 사용 후 또는 손상되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되며 올바르게 보관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제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모든 당사자는 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 상품을 검사하며 만지고 검사 전후에 손을 소독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물건(예: 지게차, 주문용 기기)의 공유를 제한하고 공유된 표면은 접촉하지 마십시오. 또는, 사람들이 공유하는 물건 또는 자주 만지는 영역을 접촉할 경우 장갑(작업용 또는 의료용)을 착용하십시오. 또는,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으십시오.</li> </ul>	
청소 및 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<b>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</b>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 및 <b>보건부</b>(Department of Health, DOH)의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날짜, 시간 및 청소 범위를 기록한 청소 일지를 현장에 유지하십시오.</li> <li>✓ 비누, 물, 종이 타월을 사용한 손 씻기,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60%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포함하여 직원을 위한 손 위생대를 제공하고 유지하십시오.</li> <li>✓ 직원들이 손 위생을 준수하여,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세척/소독 용품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권장하십시오.</li> <li>✓ 상품의 적재물(예: 트럭 적재물)을 옮기기 전후에 손을 소독하십시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가능하면 안전 예방책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 환기(예: 창문 및 문 열기)를 확대하십시오.</li> <li>✓ 직원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권장하고 식사 중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.</li> </ul>

자택에 머무르십시오.

확산을 방지합시다.

생명을 구합시다.



# 뉴욕 재개

##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도매업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 지역의 모든 도매 업체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 사업으로 운영이 허용된 주 전역의 도매 업체에도 적용됩니다.

COVID-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도매 업체는 도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건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변경 사항을 운영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해당 지역, 주 및 연방 법률, 규정 및 표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### 의무 사항

### 권장 모범 사례

#### 청소 및 위생 (계속)

- ✓ 최소한 매 업무 교대 후,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하고, 필요할 때는 더 자주 수행하며, 공용 물건(예: 지게차, 주문용 기기) 및 표면뿐 아니라 화장실 및 공동 구역 등 통행량이 많은 구역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을 하십시오.
- ✓ 현장, 공유 표면 및 기타 구역 그리고 장비 및 도구의 청소 및 소독은 COVID-19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환경보호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에서 확인한 환경보호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, DEC) **제품**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.
- ✓ 세척 또는 소독 제품 또는 청소 및 소독 활동이 안전 위험을 유발하거나 재료 또는 기계를 손상시키는 경우, 직원은 사용 중 손 위생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/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지급받아야 합니다.
- ✓ 식음료 공유(예: 뷔페식 식사)를 금지합니다.

#### 의사소통

- ✓ 주에서 발행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함을 확인하십시오.
- ✓ 현장 곳곳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직원들이 적절한 위생,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, PPE의 적절한 사용,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킵니다.
- ✓ 모든 직원에게 신규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안전 지침을 자주 전달하십시오.
- ✓ 업데이트된 정보를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원, 방문자 및 고객 대상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십시오.
- ✓ 작업 현장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작업자 및 방문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일지를 유지합니다. 적절한 PPE 또는 비접촉 방식을 통해 수행되는 배송은 제외합니다.
- ✓ 작업자가 COVID-19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,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기밀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는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서에 알리고 해당 개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작업자 또는 방문자 등 잠재적인 접촉자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감염자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.

자택에 머무르십시오.

확산을 방지합시다.

생명을 구합시다.



# 뉴욕 재개

##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도매업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 지역의 모든 도매 업체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 사업으로 운영이 허용된 주 전역의 도매 업체에도 적용됩니다.

COVID-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도매 업체는 도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건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변경 사항을 운영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해당 지역, 주 및 연방 법률, 규정 및 표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	의무 사항	권장 모범 사례
의사소통 (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작업자가 COVID-19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,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기밀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는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서에 알리고 해당 개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작업자 또는 방문자 등 잠재적인 접촉자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감염자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.</li> <li>✓ 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작성된 안전 계획서를 게시하십시오.</li> </ul>	
선별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몸이 아픈 직원은 집에 머물고 직장에서 몸이 아픈 직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</li> <li>✓ 매일 직원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인 건강 선별검진 평가(예: 설문지, 체온 검사)를 실시하며,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. (1) 지난 14일 동안 COVID-19 <b>증상</b>이 있었는지 여부, (2) 지난 14일 동안 COVID-19 검사에 대해 양성되었는지 여부 및/또는 (3) 지난 14일 동안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COVID-19 사례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. 매일 평가 응답을 검토해야 하며 해당 검토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.</li> </ul> <p>COVID-19 증상이 있는 직원은 퇴근한 후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를 받고 COVID-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직원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완료한 후에 한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증상이 없지만 지난 14일 동안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직원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완료한 후에 한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(예: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) 선별검사를 수행하십시오.</li> </ul>



# 뉴욕 재개

##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도매업 지침

본 지침은 **재개**가 허용된 뉴욕 지역의 모든 도매 업체뿐 아니라 이전에 필수 사업으로 운영이 허용된 주 전역의 도매 업체에도 적용됩니다.

COVID-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모든 도매 업체는 도매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요건의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해당 변경 사항을 운영에 통합해야 합니다. 본 지침은 기존의 해당 지역, 주 및 연방 법률, 규정 및 표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### 의무 사항

### 권장 모범 사례

#### 선별검사(계속)

COVID-19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개인과 밀접하게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직원은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고 증상 및 체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, 상시 안면 마스크 착용,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.

- ✓ 현장 선별검사자는 CDC, DOH 및 OSHA 프로토콜에 정통하고 고용주가 확인한 개인에 의해 훈련을 받아야 하며, 최소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하여 적절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✓ 양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청소, 소독 및 접촉자 추적 계획을 세우십시오.